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개선(안)

(by 하나금융티아이 공인전자문서센터)



< 2023.01 >

ESG 경영 전략 대응

ESG 가치 평가 지표



#출처 : 금융투자협회

하나금융그룹, 'ESG원년' 2030년까지 60조원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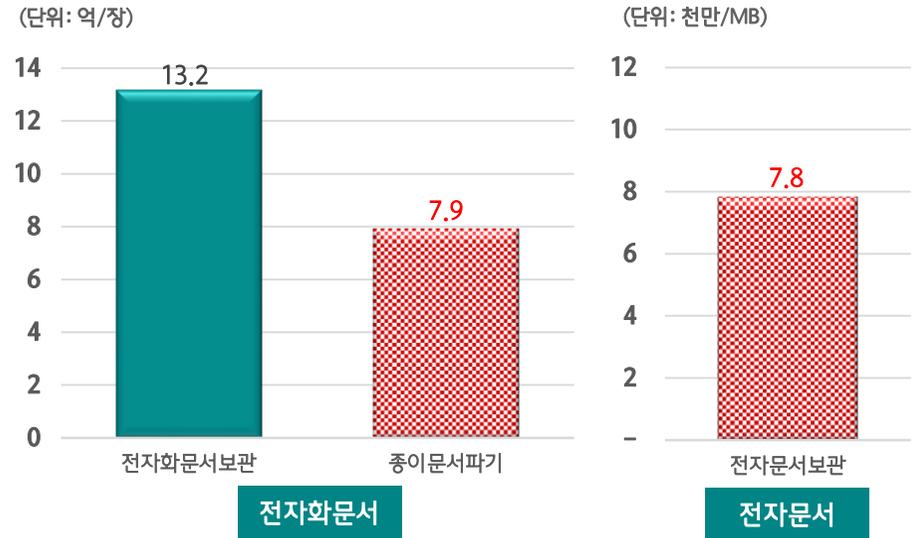
'2030&60·ZERO&ZERO' 선언



- 2050년까지 그룹 사업장 탄소배출량과 석탄 프로젝트 금융(PF) 잔액을 모두 제로!
- ESG 전담 컨트롤타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설립

#2021.04.22 한국경제 발취

DATARIUM Paperless 현황('09~'22년)



※ 환경보존 효과(종이문서파기 + 전자문서보관)

구분	단위	보존 효과	비고
30년생 원목	그루	106,393	종이문서파기+전자문서보관
물	만톤	623	
이산화탄소	tCo2	1,794	전자문서보관
전기	MWh	18,683	

※ A4용지 환산 기준

- 종이문서파기 : A4용지 1장 → 재생용지 0.9장
- 전자문서보관 : 1MB → A4용지 8장

ESG 대시보드(환경보호)

환경보호 | Paperless

자료 기준일 : 2022.08.03

환경보호 어렵지 않습니다. Datarium을 활용하세요.

Datarium은 지금까지 총 13억장의 종이를 Paperless하였고, 그 효과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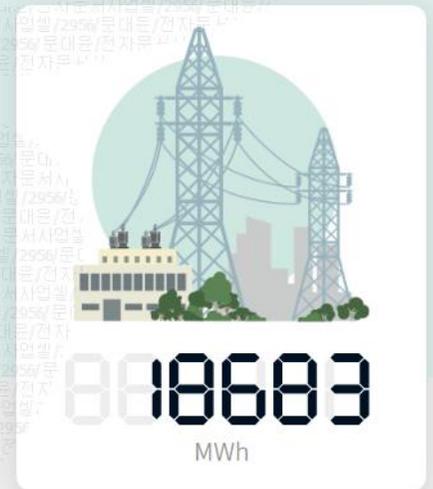
87,618명이
1년간 숨칠 수 있는 산소



56,049명이
1년간 마실 수 있는 물



1,868명이
1년간 운영하는 승용차 대수



2,491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출처 : 데이타리움(www.datariu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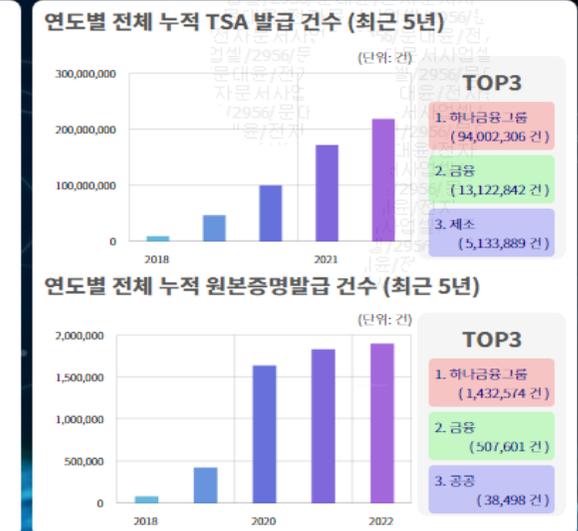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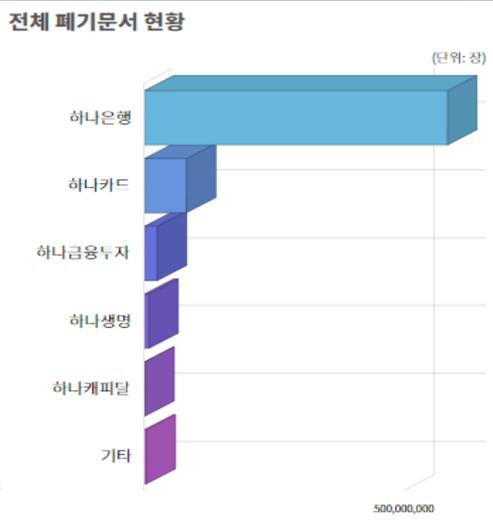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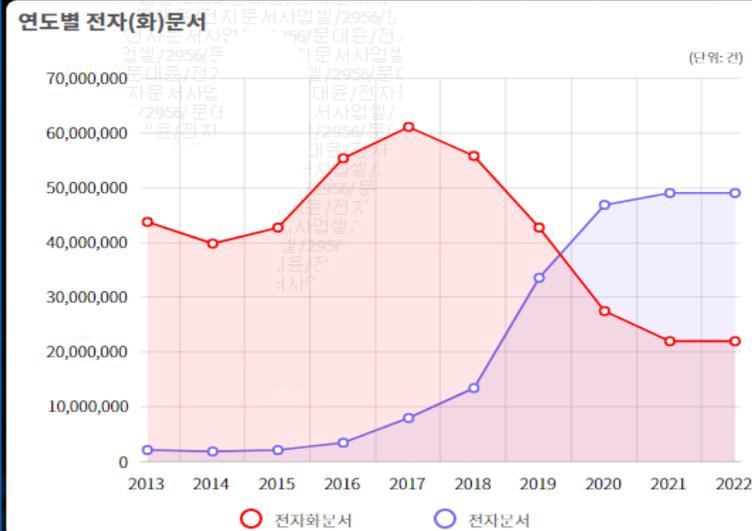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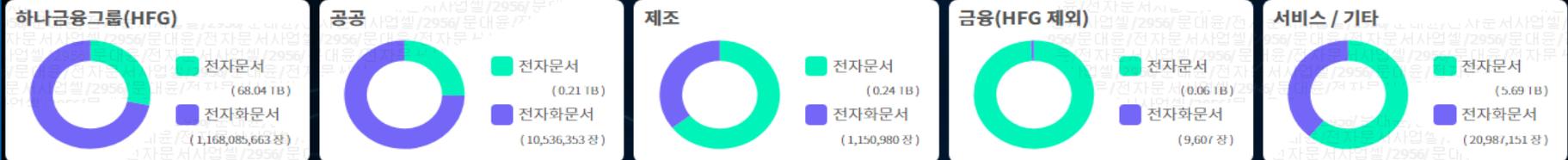
ESG 대시보드(Paperless)

환경보호 | Paperless

자료 기준일 : 2022.08.03

ESG 대시보드

산업별 전자(화)문서 처리현황



#출처 : 데이타리움(www.datarium.co.kr)

1.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개요
2.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개선
3. “R” 자동차 외부 회계감사기관 검토 결과
4. 비즈플레이 국세청 질의 답변
5. 모 법인회사 국세청 질의 답변

별첨1. 법인세법 제112조

별첨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별첨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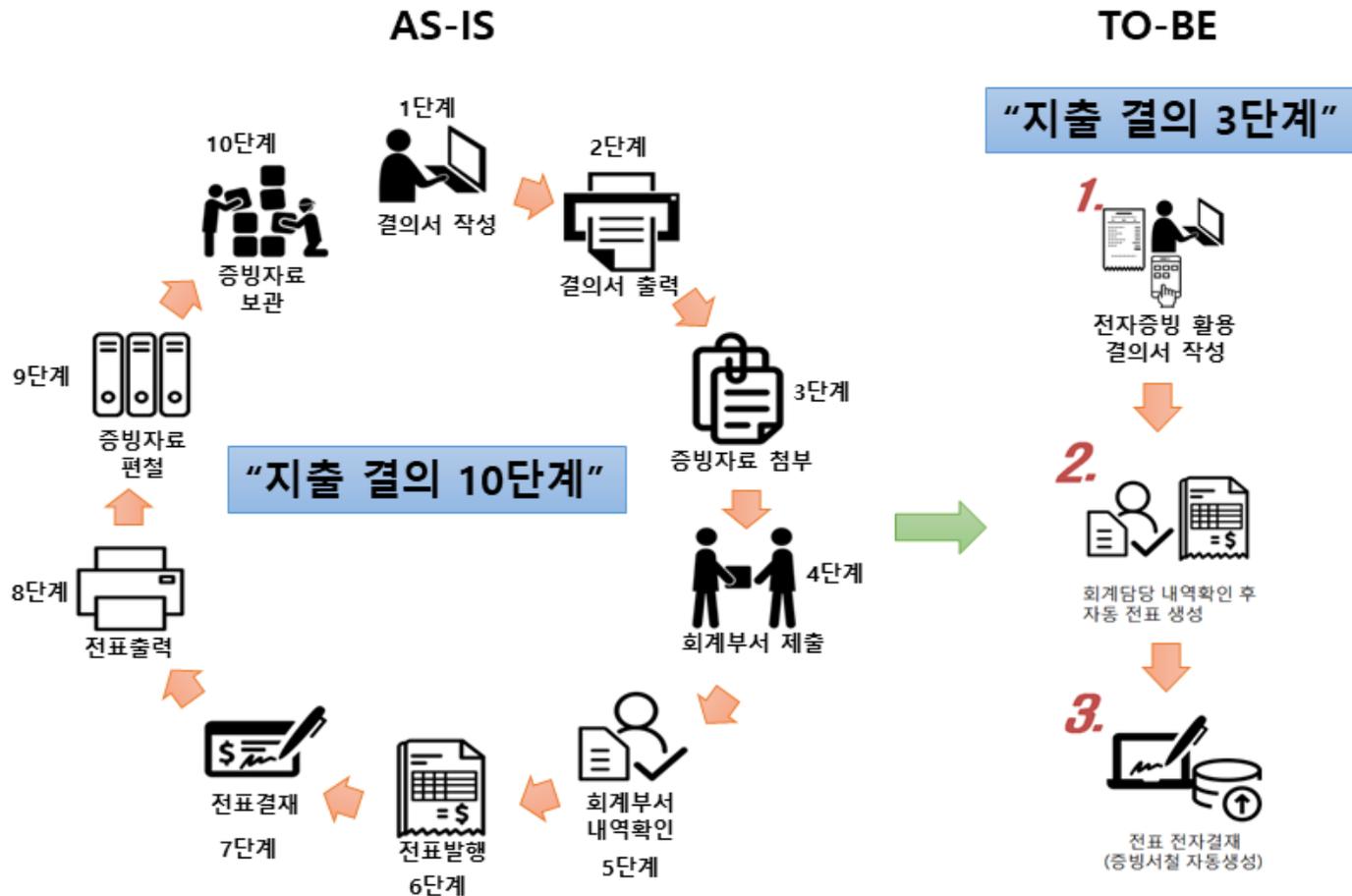
별첨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

별첨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

별첨6. 원본 폐기 불가 문서

1.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개요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문서관리업무 효율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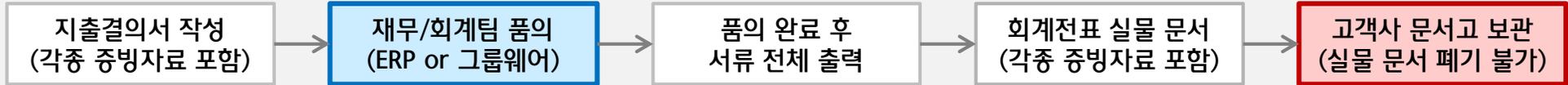
2.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혁신

고객사

Datarium

기존 프로세스 (As-Is)

<문서고 보관 유형>



<Datarium 연계 시 고객사 도입 항목>

- 전자화문서 보관 유형 : 이용자시스템 / 고객사 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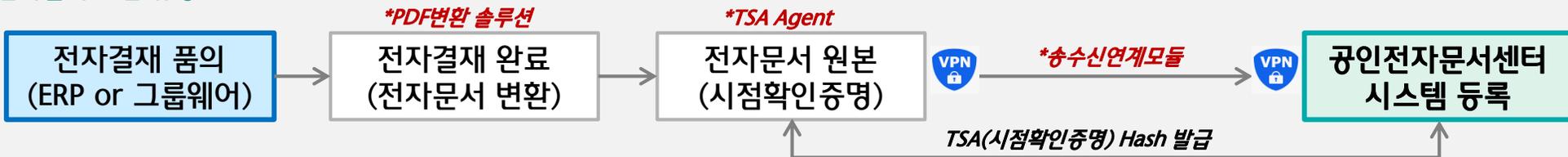
- 전자문서 보관 유형 : PDF변환 솔루션 / TSA Agent / 송수신연계모듈 / VPN

혁신 프로세스 (To-Be)

<전자화문서 보관 유형>



<전자문서 보관 유형>



3. “R” 자동차 외부 회계감사기관 검토 결과

Q.
적격증빙을 모두 PDF로 관리 할 경우 세무상 리스크 여부 및 관련 가산세 금액 산정방법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명서류

A.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명서류는 대부분 전자적 증빙이기 때문에 전자적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실물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증빙의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

실물 지출증명서류를 원본이 아닌 PDF로 보관할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실물 지출증명서류는 원본 보관이 원칙이기 때문에 PDF로 보관할 경우 이를 적격증빙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7조 제5항에 따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지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 31조의 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해당하는 단체(기관)에 증빙을 보관할 경우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 보관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비즈플레이 국세청 질의 답변

2017. 6. 21.

;;;국민신문고 - 나의민원 인쇄;;;

나의 민원 인쇄하기

*인쇄 페이지 열람 시 인쇄 이력이 기록됩니다.

인쇄자 : 황정원

[민원인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706-074633	신청일	2017-06-09 10:54:58
신청인구분	개인		
신청인이름	황정원		
연락처	02-3779-4987	휴대전화	010-6285-9340
주소	[07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진행상황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이메일	ideajjang@bizplay.co.kr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	중이영수증을 스캔해서 보관할 경우 법적 증빙 효력 여부
민원내용보기	<p>안녕하십니까! 비즈플레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황정원입니다.</p> <p>저희 회사는 법인카드 외에도 직원이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선결제 후 회사에 경비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보관 및 관리가 어려워 효율적인 증빙서류 관리를 위해 지출결 의서와 함께 스캔하여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p> <p>법인카드는 법적으로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수신하여 보관하는 경우 실물 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p>이에 금일 국세청에 전화로 질의를 한 결과 직원 개인카드로 쓴 영수증이던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중이영수증이던 감사 때 해당 증빙서류 요청 시 출력만 할 수 있다면 중이영수증을 스캔해서 파일형태로 보관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중이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p> <p>이에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p> <p>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기관정보]

처리기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1팀		
담당자(연락처)	임지형 (064-780-6148)		
접수일	2017-06-12 07:57:5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6-100569
답변일	2017-06-21 14:37:52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rintPopup.jsp?peti_no_c=1AA-1706-074633&open_yn_c=Y&CoPop=Y&menu_id...

2017. 6. 21.

;;;국민신문고 - 나의민원 인쇄;;;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납세자는 각 세법인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3항에 해당되면 증거서류를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2항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각 법 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임지형, 064-780-6148)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타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02.03)일부개정

제65 조 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rintPopup.jsp?peti_no_c=1AA-1706-074633&open_yn_c=Y&CoPop=Y&menu_id... 2/4

5. 모 법인회사 국세청 질의 답변

Q.

당사는 ERP 도입하여 전산으로 지출결의서 작성 반영하고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 세금계산서/기타서류를 스캔으로 결재처리 하고 완료 후 증빙원본은 다시 결재 지결과 함께 제출/보관하고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증빙은 스캔으로만 처리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지 않는다고합니다.
당사에서도 스캔한 서류로만 증빙보관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세무조사 및 기타 조사 증빙으로 스캔본으로 인정가능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간이영수증,계산서, 기타 영수증)

예전에는 세무조사 또는 회계증빙 보관은 모두 원본(수령)만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제출/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A.

법인은 **법인세법 제112조(별첨1)**에 따라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 등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관이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별첨2)**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3항(별첨3)**에 해당되면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별첨4)**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 별첨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뒷장 계속...)

6. 회계전표 보관 프로세스 주요 고객사

전자화문서 보관



전자문서 보관



별첨1.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서이46012-10299 , 2001.10.05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별첨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별첨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20. 6. 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20. 6. 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별첨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 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존방법(보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별첨6)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별첨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개정 2020. 6. 9.>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0. 6. 9.>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첨6. 원본폐기 불가 문서

* 상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원본 보관 필요문서 (26가지 문서)
: 상법의 규정에서 “기명날인, 서명”을 요하는 장부와 서류

순번	문서명	대상자	업종	비고
1	대차대조표	상인일반	공통	제30조
2	결약서	중개인	중개업	제96조
3	화물명세서	송하인	운송업	제126조
4	화물상환증	운송인	운송업	제128조
5	창고증권	창고업자	창고업	제156조
6	합명회사 정관	합명회사	공통	제179조
7	주식회사 정관	주식회사	”	제289조
8	발기인의 의사록	”	”	제297조
9	주식청약서	”	”	제302조
10	주식전환청구서	”	”	제349조
11	주 권	”	”	제356조
12	총회의사록	”	”	제373조
13	이사회회의록	”	”	제391조의3
14	감사록	”	”	제413조의2
15	신주인수권증서	”	”	제420조의2
16	사채청약서	”	”	제474조
17	채 권	”	”	제478조
18	전환청구서	”	”	제515조
19	신주인수권증서	”	”	제516조의5
20	유한회사 정관	유한회사	”	제543조
21	출자인수증명서	”	”	제589조
22	손해보험증권	보험자	보험업	제666조
23	인보험증권	보험자	”	제728조
24	선하증권	해상운송인	해상운송업	제853조
25	선하증권등본	송하인	”	제856조
26	해상화물운송장	해상운송인	”	제863조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subby777@hanafn.com
010-3217-5245 / 이승섭 팀장